

의안번호	2216801
의 퇴 인	김기웅의원
회 답 일	2026.2.20.
추계번호	26B08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4(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태 점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제2항) 1. 1회용품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의 도입 여부 2.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관리 실태 3. 그 밖에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 (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4(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태 점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¹⁾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1)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에 대하여 사용량의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제품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²⁾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무상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제11조³⁾에 따라 지도·점검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도·점검의 주기 및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장 현황
 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4. 중점 점검사항 등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11조(지도·점검결과 제출) 시·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군·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점검 비용 등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점검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사항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대상 사업장 수 및 전년도 점검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 (1) 객실과 객실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장 : 분기 1회
- － (2)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장 : 반기 1회
- －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장 : 연 1회

나. 숙박업, 목욕장업 : 분기 1회

다.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 (1) 대규모점포 : 분기 1회
- －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 : 분기 1회
- － (3)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 : 연 1회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분기 1회

마.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분기 1회. 단, 경기가 없는 분기는 제외함

바. 기타 사업장 : 연 1회

2. 수시점검

- 수시점검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법령위반 사항이 인지된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 기타 언론보도, 민원제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자료 2]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사항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분	주요 점검사항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o 1회용품(1회용 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 o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 o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을 무상 제공하는지 여부
2. 숙박업 목욕장업	- o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여부 - o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3.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o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종이봉투·쇼핑백은 순수 종이 재질(손잡이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제공 여부 - o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용도 준수 여부 - 법률이 정하는 용도에 따른 적정사용 여부 -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문 게시 여부 -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1회용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 인쇄 여부 - o 현금 환불 등으로 회수된 1회용 봉투·쇼핑백 재사용·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 o 대규모점포의 경우 1회용 우산비닐 사용 여부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 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o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o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억제)의 무상제공 여부
6. 기타 사업장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